KAPA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HM2603-16-001
평가금액	411,981,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 양형찬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6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 양형찬	eyJhbGciOiJFUzI1NiIs	2026-03-30 21:26: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4 외 소재 물건 (2025-12514-A01)
의 뢰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HM2603-16-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양 형 찬

감정평가액	사억일천일백구십팔만일천원정(₩411,981,000.-)			
의 뢰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및 지방세)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유태균 (2025-12514-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3.28	2026.03.28	2026.03.29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165 이	토지	1,165 하 여	- 백	411,981,000
	합 계					₩411,98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1리 마을회관" 북측 및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공매(국세 및 지방세)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 임.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6년 03월 28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음.

4. 실지조사 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03월 28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공부상 면적, 이용상황과 현황의 일치여부 및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①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귀 제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②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갑)상 건축물이 소재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조회되지 아니하는 바, 귀 공사와 협의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③ 본건 일련번호 1의 경우 위성사진상 이웃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부지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지적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④ 본건에 대한 지적경계 등은 목측, 관련공부, 탐문조사 및 위성사진 등으로 판단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⑤ 본건 지하에 매립가능성이 있는 폐기물 등은 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감안하지 않고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II. 대상부동산의 확정

1.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지세	2025.01.01. 공시지가(원/㎡)
1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1-1	537	전	생산관리	전기타	세로(가)	부정형평지	123,100
2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4	628	대	생산관리	단독주택	세로(가)	사다리완경사	199,600

2. 위치도 등

토지이용계획도	위성사진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규정

1)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7조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 가능함.
제11조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함.
제12조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2) 세부 감정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 내용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되, 「동 규칙」 제12조에 의해 다른 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 공법상제한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6년 1월 1일]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 (㎡)	이 용 상 황	접 면 도 로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A	서신면 궁평리 326	생산관리	전	1,258	전	세로 (가)	사다리 평지	131,000
B	서신면 궁평리 611	생산관리	대	627	단독 주택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201,100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B 생산관리	0.30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26.01.01~26.03.28) (생산관리) 2026.01.01 ~ 2026.01.31 : 0.160 2026.02.01 ~ 2026.02.28 : 0.074 (1 + 0.00160) * (1 + 0.00074) * (1 + 0.00074 * 28/28) ≒ 1.00308

※ 2026년 03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아, 직전변동률(%)을 연장•사정하여 적용하였음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4) 개별요인 비교

① 개별요인 비교치 항목

구분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세 부 항 목
주택지대 상업지대 공업지대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계통 및 연속성 등
	접근조건	주택지대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
		상업지대	
		공업지대	
	환경조건	주택지대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인근환경 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등
		상업지대	
		공업지대	
	획지조건		면적, 깊이, 형상, 고저, 이용상황, 접면구조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농경지대	접근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등
	자연조건		일조, 토양 및 토질, 자연환경, 인근환경 등
	획지조건		면적, 깊이, 형상, 고저, 경작의 편부, 경사도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구분	조건	개 별 요 인 항 목 세 부 항 목
임야지대	접근조건	임도의 배치 및 폭 등, 취락과의 접근성 등
	자연조건	일조, 토양 및 토질, 자연환경, 인근환경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등

②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번호	표준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	비고
1	A	-	0.95	1.00	1.02	1.02	1.00	0.988	생산관리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나, 획지조건(이용상황 등) 및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 등)에서 우세함.							
2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생산관리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등에서 대등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 (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② 가격조사자료

■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평가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원)	토지단가 (원/㎡)
1	서신면 궁평리 334-*	생산관리	전	담보	2025.06.09	189,240,000	285,000
2	서신면 궁평리 648-2*	생산관리	대	법원경매	2025.08.21	459,342,000	507,000
3	서신면 궁평리 433-*	생산관리	대	담보	2024.08.22	258,258,000	429,000

※ 자료 :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례)

■ 인근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비고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1	서신면 궁평리 61*	생산관리	전	토지사례	2025.12.16	392,040,000	237,600
#2	서신면 궁평리 60*	생산관리	답	토지사례	2025.03.08	110,000,000	255,813
#3	서신면 궁평리 436-*	생산관리	대	토지사례	2022.08.30	144,350,000	375,911

※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 3, #2]를 비교표준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산출근거	사례선정	사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금액	산출
	#2	255,813	1.00	1.02495	1.00	1.038	262,196	
	표준지 기호	표준지 단가	시점수정		산출금액			2.071
	A	131,000	1.00308		131,403			
시점수정	경기도 화성시 (2025.03.08.~2026.03.28.) (생산관리): 1.02495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	격차율	
	-	1.07	1.00	0.99	0.98	1.00	1.038	
	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 및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 등)에서 열세함.							

산출 근거	사례선정	사례단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금액	산출
	3	429,000	1.04412	1.00	0.950	425,531	
	표준지 기호	표준지 단가	시점수정	산출금액			2.110
	B	201,100	1.00308	201,719			
시점 수정	경기도 화성시 (2024.08.22.~2026.03.28.) (생산관리): 1.04412						
지역 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	격차율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표준지는 사례 대비 획지조건(고저 등)에서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비교사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격차율, 인근 거래사례의 거래단가 수준 및 호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구 분	산정 보정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비고
비교표준지 기호(A)	2.071	2.07	-
비교표준지 기호(B)	2.110	2.11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단가(원/㎡)

일련 번호	표준지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단가(원/㎡)		비고
	기호	원/㎡					산정	결정	
1	A	131,000	1.00308	1.00	0.988	2.07	268,741	269,000	-
2	B	201,100	1.00308	1.00	1.000	2.11	425,628	426,000	-

2. 거래사례비교법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최근 거래되었으며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사례 #1, #3」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비고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1	서신면 궁평리 61*	생산관리	전	토지사례	2025.12.16	392,040,000	237,600
#2	서신면 궁평리 60*	생산관리	답	토지사례	2025.03.08	110,000,000	255,813
#3	서신면 궁평리 436-*	생산관리	대	토지사례	2022.08.30	144,350,000	375,911

2) 사정보정

선정된 거래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3) 시점수정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생산관리	0.25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25.12.16~26.03.28) (생산관리) 2025.12.01 ~ 2025.12.31 : 0.201 2026.01.01 ~ 2026.02.28 : 0.074 2026.02.01 ~ 2026.02.28 : 0.074 (1 + 0.00201 * 16/31) * (1 + 0.00074) * (1 + 0.00074 * 28/28) ≒ 1.00252
#3 생산관리	8.21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22.08.30~26.03.28) (생산관리) 2022.08.01 ~ 2022.08.31 : 0.280 2022.09.01 ~ 2022.09.30 : 0.257 2022.10.01 ~ 2022.10.31 : 0.178 2022.11.01 ~ 2022.11.30 : 0.092 2022.12.01 ~ 2022.12.31 : 0.066 2023.01.01 ~ 2023.12.31 : 1.049 2024.01.01 ~ 2024.12.31 : 3.179 2025.01.01 ~ 2025.12.31 : 3.012 2026.01.01 ~ 2026.02.28 : 0.074 2026.02.01 ~ 2026.02.28 : 0.074 (1 + 0.00280 * 2/31) * (1 + 0.00257) * (1 + 0.00178) * (1 + 0.00092) * (1 + 0.00066) * (1 + 0.01049) * (1 + 0.03179) * (1 + 0.03012) * (1 + 0.00074) * (1 + 0.00074 * 28/28) ≒ 1.08219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5)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번호	사례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자연(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비고
1	#1	-	1.10	1.00	1.08	1.00	1.00	1.188	생산관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이용상황 및 고저 등)에서 우세함.							
2	#3	1.15	0.99	1.00	0.93	1.00	1.00	1.059	생산관리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편의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및 고저 등)에서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

일련번호	거래사례 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단가(원/㎡)		비고
	기호	원/㎡					산정	결정	
1	#1	237,600	1.00	1.00252	1.00	1.188	282,980	283,000	-
2	#3	375,911	1.00	1.08219	1.00	1.059	430,809	431,000	-

3. 시산가액 조정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원/㎡)	결정단가(원/㎡)	비고
1	269,000	283,000	269,000	-
2	426,000	431,000	426,000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구분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토지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441-1	537	269,000	144,453,000	-
	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444	628	426,000	267,528,000	-
합 계			**1,165**	**-**	**411,981,000**	**-**

※ 상세내역은 후첨 "명세표"를 참조바람.

2. 결정의견

상기의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해 그 적정성이 지지되므로, 상기와 같이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1-1	전	생산관리지역	537	537	269,000	144,453,000	
2	동소	444	대	생산관리지역	628	628	426,000	267,528,000	
	합 계							**₩411,981,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2. 교통상황	3. 형태,지세
4. 이용상황	5. 접면도로상황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7. 제시목록외의 물건	8. 기타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1리 마을회관" 북측 및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3. 형태,지세

일련번호 1: 인근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임.

일련번호 2: 인근토지 대비 경사지대 내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임.

4. 이용상황

일련번호 1: 현황 전기타임.

일련번호 2: 단독주택 건부지 등 임.

5. 접면도로상황

일련번호 1, 2 공히 남측으로 세로변의 도로에 접함.

6.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생산관리지역 등 임.

7. 제시목록외의 물건

-

8.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HM2603-16-001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1-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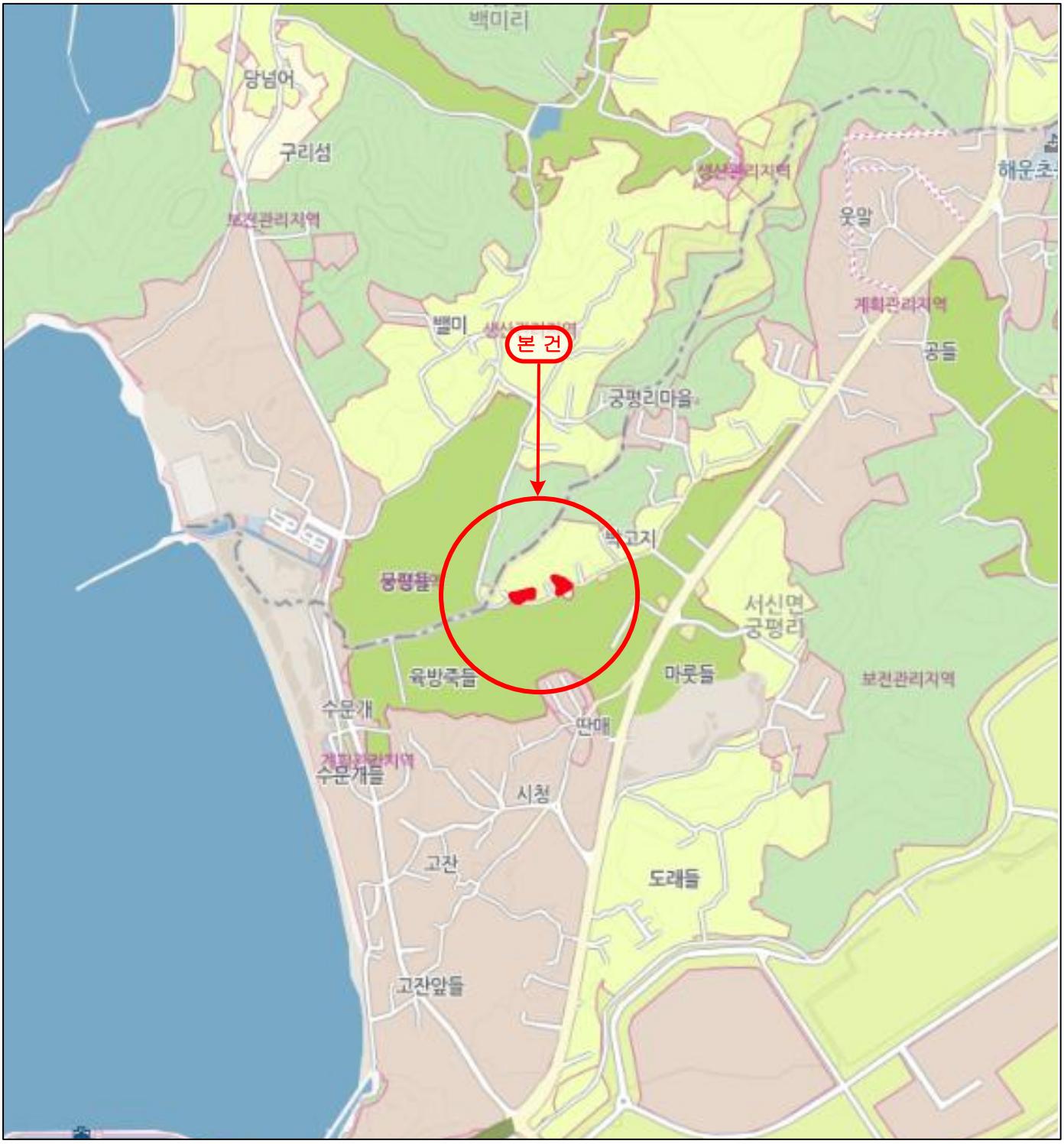

HM2603-16-001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1-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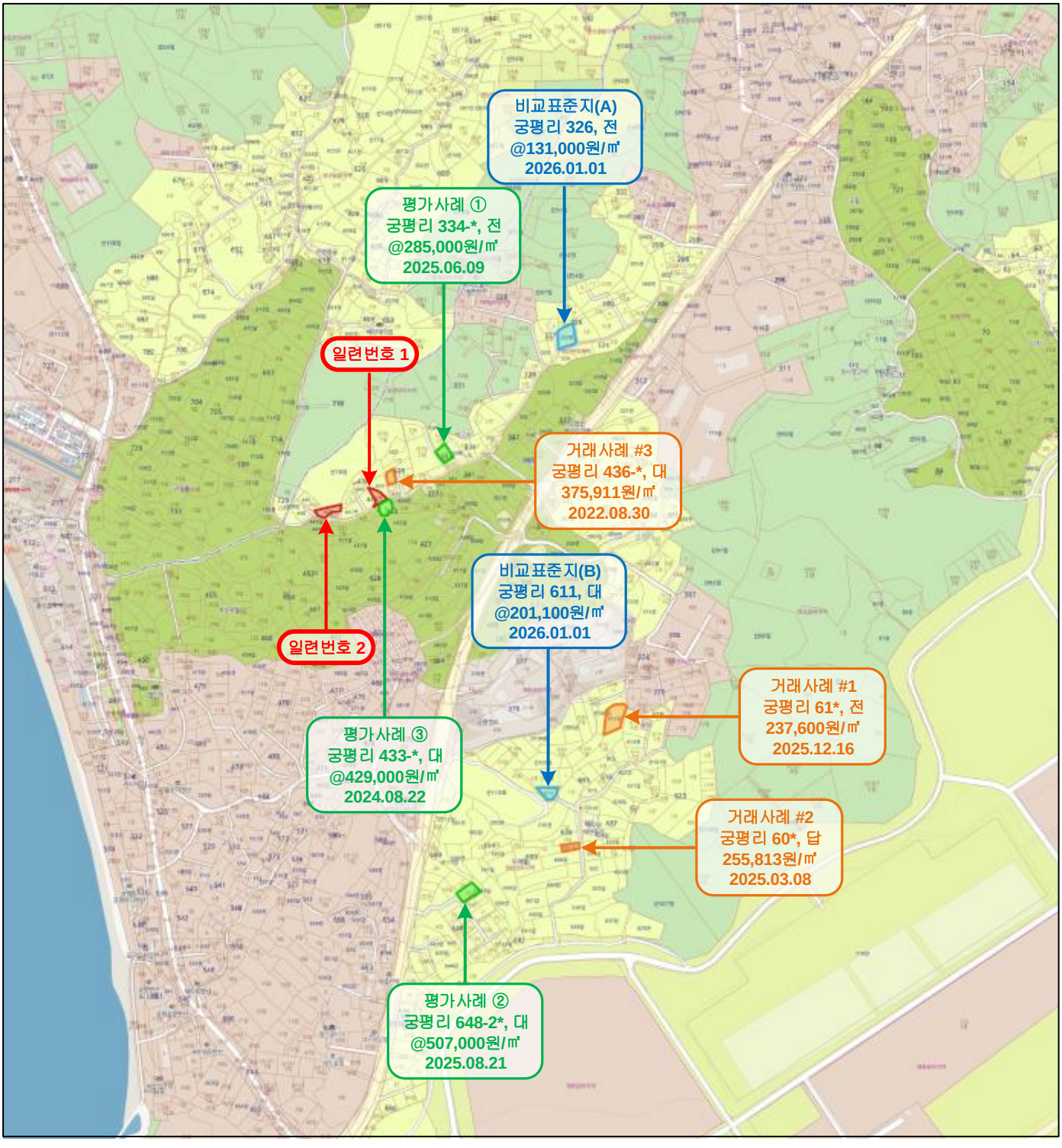

HM2503-16-001

지 적 개 황 도

N

S

NON-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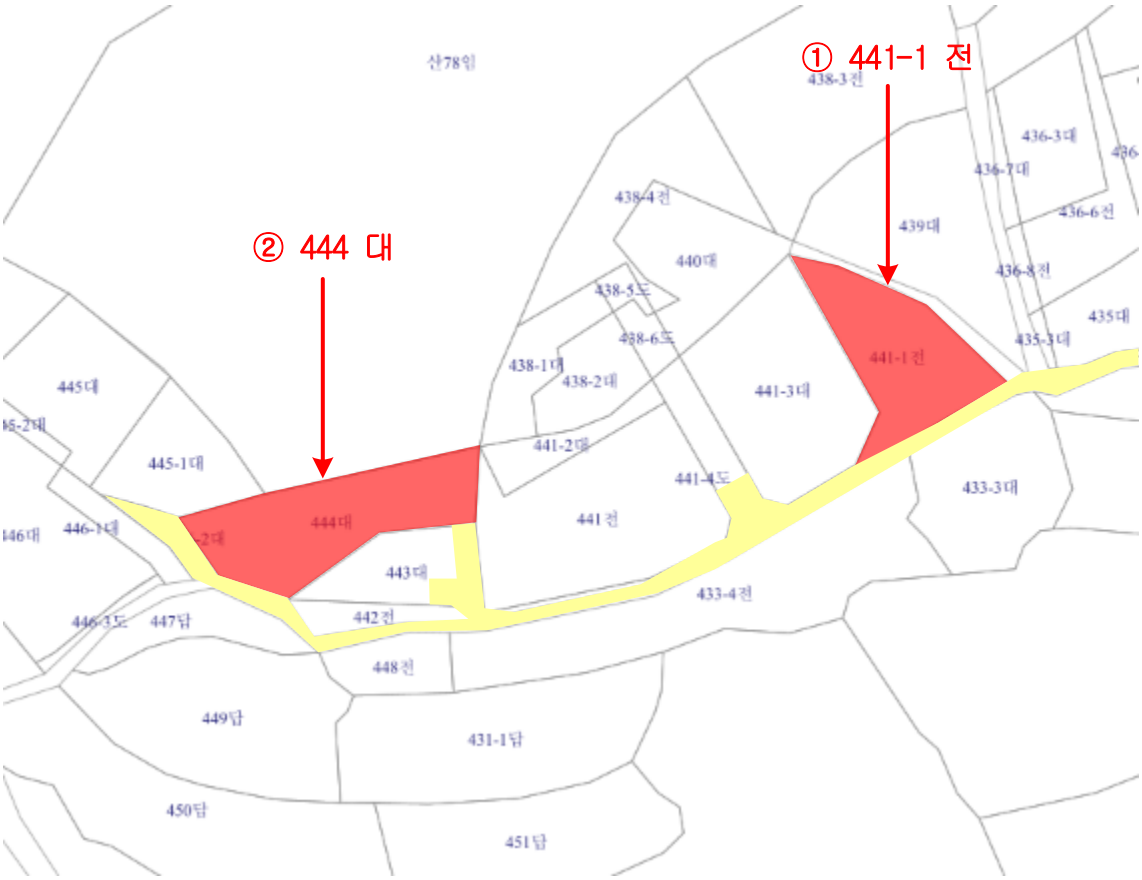

범 례					
	평 가 대 상 토 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 로		평 가 건 물 1 층		평 가 제 외 건 물
	도 시 계 획 선		평 가 건 물 2 층		제 시 외 건 물

[1]

[1]

[2]

[2]

회 보 서

우)18468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43, 812호 (영천동) TEL. 031-378-9226
E-Mail : mulcap@naver.com FAX. 031-377-9224

문서번호 : HM2603-16-001

시행일자 : 2026-03-29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참 조 :

제 목 :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3.16자 귀 제 『2025-12514-A01』 호로 의뢰하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4 외 소재 물건 (2025-12514-A01)』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31-378-9226, FAX: 031-377-9224)

문서번호 : HM2603-16-001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3.16 자 귀 제『 2025-12514-A01 』 호로 의뢰하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궁평리 444 외 소재 물건 (2025-12514-A01) 』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598,179**	
실비	여 비	4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4,000	
	기타 실비	2,000	
	소 계	46,000	
특 별 용 역 비		-	200,000+361,981,000 x 11/10,000≒598,179
공 급 가 액		64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64,400	
합 계		**708,4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708,4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농협: 351-9146-9223-53
양형찬(하임C&A 감정평가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37-05-03090

하임 C&A 감정평가사사무소

양형찬